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8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516,2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13,516,20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의 2024. 3. 7.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 원고의 2024. 4. 8.자 의견서에 나타난 쌍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판사 김정철

별지